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의 격년 실시>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19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의 격년 실시(안 제92조의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20.

다.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의 격년 실시(안 제9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각 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장기 재정추계·재정전망 등을 실시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자료를 장기재정추계에 활용할 수 있음 - 기획예산처장관은 장기재정추계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현행법¹⁾상 기획예산처장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

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

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²⁾ 및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³⁾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추계는 통상 10년 이하의 ‘중기추계’와 그 이상의 ‘장기추계’로 나눌 수 있음. 먼저 중기추계로는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6개 보험)⁴⁾이 있으며, 장기추계로는 기획예산처의 ‘장기

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2)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전망결과를 포함
- 3) 「국가재정법」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재정전망'(5년 주기, 40회계연도 이상),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최소 3년 주기)⁵⁾, 4대 연금법⁶⁾에 따른 재정수지 계산 등이 있음.

그런데,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에 따라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려는 8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주기가 5년으로 같지만 수행 연도가 통일되지 않고, 산재보험은 3년마다 재정계산⁷⁾이 이루어지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재정계산을 몇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음.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7)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향후 45년 동안의 재정전망 실시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관련 법령 등 개요>

구분	법적근거	실시기관	전망기간	전망주기	최근실시	실시계획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재정추계위원회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70년	매 5년	2023	2028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재정추계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70년	최소 5년	2025	2030
사학연금	사학연금법 제43조	재정재계산위원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70년	최소 5년	2025	2030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제41조	국방부	45년	최소 5년	2025	2030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별도규정 없음	해당없음				
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도규정 없음	해당없음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별도규정 없음	해당없음				
산재보험	산재보험법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산재보험재정추계 자문위원회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45년	매 2~3년	2024	2027
장기재정 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기획예산처	40년 이상	5년	2025	2030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	해당없음	최소 3년	2024	2027

※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은 공운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 기간의 재정추계결과를 매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국회 제출
자료: 기획예산처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⁸⁾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사회보험이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주기가 긴 나라로, 미국과 스웨덴, 덴마크는 매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최소 4년에 한 번, 독일도 3~5년 주기로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 2022. 12.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 재정전망 주기의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점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험별 장기 재정전망 추계를 기획예산처가 공표하도록 하면, 전체 사회보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회보험의 장기전망과 전체 국가재정의 장기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사회보험의 재원 고갈은 결국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 또는 보험혜택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장기추계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재원 고갈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기존 재정전망 체계와의 중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현행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연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개별법에 따라 연금 및 사회보험에 대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합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8대 사회보험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장기 재정전망에 포함되어 있어 2년 주기의 통합 재정추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중복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중복을 해소하려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별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적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추계의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8대 사회보험은 제도별 도입 목적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 급여 체계, 가입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통합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함.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2064년 소진, 2041년 수지 적자 전환) 및 사학연금(2047년 소진, 2031년부터 수지 적자 전

환) 등 적립형 연금 제도와 GDP 대비 흑자를 유지하는 산재·고용보험⁹⁾ 간의 재정 상황 차이가 있음.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보험료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단기 보험 성격이 강하여, 초장기 적립금 추계를 위주로 하는 연금 체계와는 분석 방법론과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2년 주기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추가 신설할 경우, 전망 제도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도 기존 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장기 재정전망을 추가로 실시¹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연금·보험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장기재정추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기존 체계와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2065년 기준 GDP 대비 각각 0.26%(산재보험), 0.18%(고용보험) 흑자 예상

10)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부처명	사회보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요양보험 건강보험	개별법(국민연금 5년) 및 사회보장기본법(적어도 3년)에 따른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2년 주기 재정추계 추가 도입 시 기존 재정전망 제도들과 중복되는 측면
교육부	사학연금	각 연금 및 사회보험은 재정구조, 급여체계, 가입자 특성 및 추계방법 등이 상이하여 통합추계를 위한 공통 기준 적용 시 개별 제도의 특수성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계 주기 단축에 따른 행정부담 및 중복 추계 우려
국방부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시기와 연계하여 개별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전망을 하고 있어, 현 제도로도 10년 기준 4회 수준의 장기 재정전망 실시 중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격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탄력적 재정추계 운영을 위해 적어도 3년마다 시행되도록 개정('24.12월)된 점을 고려할 때 잦은 추계는 오히려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증폭시켜 추계 간 정합성 저하 및 신뢰도 하락을 야기할 우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매년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재정추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 실효성 문제
	산재보험	기존 재정전망제도와의 중복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 우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4. · 5. (생략) ④ ~ ⑪ (생략) <u><신 설></u>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 도 장기재정추계 4. · 5.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u>제92조의2(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u>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보장제도 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 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u>노인장기요양보험</u> 7.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에 따 른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u> 8.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에 따 른 <u>산업재해보상보험</u> ② 제1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 의하 여 <u>중장기 재정추계·재정전망 등을</u> <u>실시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u> <u>자료를 제1항에 따른 장기재정추계</u> <u>에 활용할 수 있다.</u> ③ <u>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u> <u>장기재정추계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u> <u>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u> <u>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u> <u>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u> <u>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u> <u>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u> <u>다.</u> ④ <u>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재</u> <u>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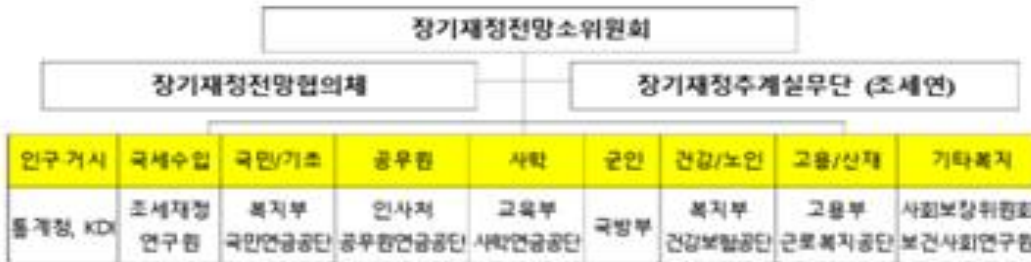
02)6788-5152

1.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마다 실시,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제7조③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④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제7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3. 전망방법

- 정부 차원의 통합된 전망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적용하여 전망

<장기재정전망 전망개요>

❶ 전망 전제	❷ 항목별 전망	❸ 총량 전망
① 공통 전제: 인구, 거시경제 변수 (성장률, 물가, 이자율, 임금 등) ② 분야별 주요전제: 사회보험 보험요율 등 < 통계청 / KDI / 관계기관 >	① 총수입: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수입 ②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 조세연 / 관계기관 >	① 재정수지: 통합· 관리 재정수지 ② 국가채무(D1) < 조세연 >

자료: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